

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의원

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김원태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장민원 확인·점검에 따른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,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를 신설하여 시민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점검·신고하는 주민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‘내 지역 지킴이(시민 불편살피미)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또한 안 제26조를 신설하여 현장민원 확인·점검에 따른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고자 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
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